

방송통신발전기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안)

제정 2011. 6. 27.
개정 2012. 7. 23.
개정 2013. 6. 12.
개정 2014. 4. 28.
개정 2015. 10. 6.
개정 2016. 5. 9.
개정 2017. 4. 25.
개정 2017.12. 13.
개정 2019. 6.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투자”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투자상품의 종류, 매매의 시기와 방법 등 투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2. “간접투자”란 진흥원이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투자에 관해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3. “외부위탁기관”이란 간접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운용 전문기관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은행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① 진흥원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할 때는 자산운용계획의 운용자산 규모, 자산배분 정책, 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상품은 아래 각호를 기초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금융상품 선택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 단기자금은 적정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2. 중장기자금은 자산배분안, 허용한도, 만기구조, 금융시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한다.
3. 금융상품은 환금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③ 진흥원은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 본점 또는 본점이 지정한 광주·전남지역의 지점을 통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이 없는 체신관서 및 본점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법인에 대하여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금융기관의 선정

제4조(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등) ① 진흥원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1의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권 금융기관을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총점을 산정한다(③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평가없이 A등급을 부여하고, 특수은행은 평가순위 상위 30%의 경우 A등급, 그 이하의 경우 B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융기관의 총점별 순서로 은행권 금융기관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표 2의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권 금융기관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90% 아래에 속하는 금융기관
2.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금융기관
3. 신용등급이 BB 미만인 금융기관
4.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3% 이상인 금융기관
5.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제5조(증권회사 평가기준 등) ① 진홍원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3의 증권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회사를 평가하여 증권회사별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증권회사를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표 4의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80% 아래에 속하는 증권회사

2. 신용등급 BB 미만의 증권회사

3.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제6조(자산운용회사 평가기준 등) ① 진홍원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5의 자산 운용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를 평가하여 자산운용회사별 총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자산운용회사를 A, B, C 급으로 분류 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별표 6의 「자산운용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는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총점순위 상위 50% 아래의 자산운용회사

2. 집합투자기구(펀드) 설정규모 5,000억 원 미만의 자산운용회사

3. 기타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

제7조(직접투자) ① 진홍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현금성자금 및 확정금리형 상품을 운용할 때에는 금융기관 선정시점에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유형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조기의 현금 유동성에 대비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현금성 자산 계좌에 추가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50억 원 이하 자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홍원은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 선정 시점에 금융기관별 판매상품 유형별 금리 수준과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투자) 진홍원은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외부위탁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외부위탁기관의 선정)** ① 외부위탁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외부위탁기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평가와 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③ 외부위탁기관의 선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평가에 따른 평가점수를 40%, 별표 7의 외부위탁기관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60%로 반영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구술심사를 병행하는 경우 구술심사에 참여한 사람 전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한 외부위탁기관을 제외한다.
- ④ 진흥원은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운용하고자 하는 자산운용 유형, 상품유형, 상품운용의 주요 내용, 운용예정금액, 제안자격, 제안서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융기관별 자산운용한도 및 외부위탁기관 선정의 특례)**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결재를 받아 금융기관별 운용한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안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2.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운용하는 상품에 예탁하는 경우
 3. 조기의 현금 소요에 대비하여 10억원 이하의 자산을 기준에 운용중인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자산운용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금융상품에 기준 예탁금액의 50% 이내에서 추가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자산의 보호나 예상되는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펀드평가회사 등의 공개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선정한 우수한 금융상품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연기금투자풀에 운용하는 상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의2(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평가 및 자산배분) ① 진흥원은 연기금 투자풀에 대한 신규 예치 또는 환매의 경우,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주간운용사 평가 후 자금을 예치 또는 환매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지침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운용의 경우
2. 업무개시 1년 이내의 신규 주간운용사인 경우(기존 주간운용사 예치 원금의 50% 미만 예치 가능)
3. 제안에 참여한 주간운용사가 1개 이하인 경우
4. 최근 6개월 이내에 주간운용사 평가실적이 존재하는 경우(기존 평가결과 준용)
5. 위험관리, 유동성부족 해소 또는 자산배분기준 준수 등을 위해 환매가 필요한 경우
6. 주간운용사의 기금관련 제규정 위반 또는 서비스의 현격한 저하 등 기금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7. 기타 평가 및 배분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장 금융기관의 관리

제11조(금융기관의 관리) ① 진흥원은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자산운용 과정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자산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점검의 강화, 담보의 확보, 채권의 보전, 예탁금의 회수, 계약의 해지나 그 밖에 운용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2조(외부위탁기관의 평가) 진흥원은 매년 외부위탁기관별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부위탁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거래제한) 진흥원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기간 내에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산운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제14조(만기도록 상품의 관리) ① 진흥원은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에 앞서 자산배분 현황, 수입과 지출 예상금액 등을 검토하여 만기 도래 상품의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투자한도, 적정 유동성,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투자하여야 한다.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만기도록 전이라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운용상품부터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성 해소 후 남은 여유 자금의 재투자시 제7조(직접투자)에 의한다

③ 간접투자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를 재투자 결정에 반영하여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초과수익	재투자기준
BM수익률 대비	10% 이상	기존예탁금액의 20% 추가예탁 가능
	5%이상~10%미만	기존예탁금액의 10% 추가예탁 가능
	△5%미만~5%미만	기존예탁금액 재예치 가능
	△5%이상~△10%미만	기존예탁금액의 10% 감액예탁 가능
	△10% 이상	기존예탁금액의 20% 감액예탁 가능

부 칙

이) 기준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제4조제1항관련)

평가점수 평가항목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12% 이상	11% 이상 12% 미만	10% 이상 11% 미만	9% 이상 10% 미만	<u>9% 미만</u>
신용등급	AAA	AA	A	BBB	BB
고정이하 여신비율	1% 미만	1% 이상 1.4% 미만	1.4% 이상 1.8% 미만	1.8% 이상 2.2% 미만	<u>2.2% 이상</u>
자기자본이익률	평균 + 30% 초과	평균 + 10% ~ 평균+30%이하	평균±10%이하	평균- 30%이상 ~ 평균 - 10%	평균 - 30% 미만
총자산순이익률	1.0%이상	0.8%이상	0.6%이상	0.4%이상	0.4%미만

비고 : 신용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별표 2)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제4조제2항관련)

등급	등급배분	특정 은행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B	평가순위 상위 9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2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0% 이내

*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별표 3)

증권회사 평가기준(제5조제1항관련)

평가점수 평가항목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신용등급	AAA	AA	A	BBB	BB
수익증권 취급수수료 수익	100억원 초과	70억원 ~ 100억원 이하	40억원 ~ 70억원 이하	10억원 ~ 4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영업용순자본비율	평균 + 30% 초과	평균 + 10% ~ 평균 + 30%이하	평균±10%이하	평균- 30%이상 ~ 평균-10%	평균 - 30% 미만
자기자본이익률	평균 + 30% 초과	평균+10% ~ 평균 + 30%이하	평균±10%이하	평균-30%이상 ~ 평균-10%	평균 - 30% 미만

비고 : 신용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별표 4)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제5조제2항관련)

등급	등급배분	특정 증권사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4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B	평가순위 상위 8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2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0% 이내

*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별표 5)

자산운용회사 평가기준(제6조제1항관련)

평가항목 평가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자산운용전문 인력	40인 초과	40인 이하	30인 이하	20인 이하	10인 이하
간접투자기구 설정현황	1.25조원 이상	1조원 이상 ~1.25조원 미만	0.75조원 이상 ~1조원 미만	0.5조원 이상 ~0.75조원 미만	0.5조원 미만
운용보수수익	20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 ~ 200억원	100억원 이상 ~ 150억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50억원 미만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 + 30% 초과	평균 + 10% ~ 평균+30%이하	평균±10%이하	평균- 30%이상 ~평균 - 10%	평균 - 30% 미만
총자산순이익률	평균 + 30% 초과	평균+10% ~ 평균+30%이하	평균±10%이하	평균-30%이상 ~평균 - 10%	평균 - 30% 미만

(별표 6)

자산운용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제6조제2항관련)

등급	등급배분	특정 자산운용회사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20% 이내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B	평가순위 상위 5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2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금액* 기준 0% 이내

* 여유자금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별표 7)

외부위탁기관 선정 기준(제9조제3항 관련)

평가점수 평가항목	배점	배점방법
운용유형상품의 초과수익률	20점	
운용유형상품의 수탁고	20점	○ 제안사 순위기준으로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점 (구간별 2점차,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계산)
제안수수료	20점	
연기금 운용경험	20점	
투자, 리서치, 위험관리 등	20점	○ 투자지침(3), 투자결정위원회 등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시스 템(3), 리서치 조직(3), 위험관리기준(3), 위험관리 전담조직 (3), 준법기준(3), 준법감시 전담조직(2) ※ 해당사항이 있으면 팔호안 점수 부여, 없으면 0점

(별표 8)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평가 및 배분기준(제10조의2제1항관련)

1.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방법
정량평가 (95)	BM대비 초과수익률	30	상위사 = 30 하위사 = $30 \times (\text{하위사점수}/\text{상위사점수})$ * 음(-)의 수익률 산출시 하위사에 10점 부여
	방발기금 운용실적 (BM대비 초과수익률)	30	상위사 = 30 하위사 = $30 \times (\text{하위사점수}/\text{상위사점수})$ * 음(-)의 수익률 산출시 하위사에 10점 부여
	위험조정 수익률 (샤프지수)	25	상위사 = 25 하위사 = $25 \times (\text{하위사점수}/\text{상위사점수})$ * 음(-)의 수익률 산출시 하위사에 8점 부여
	제안수수료	10	상위사 = 10 하위사 = $10 \times (\text{하위사점수}/\text{상위사점수})$ * 중도환매수수료 부과시 하위사에 3점 부여
정성평가 (5)	서비스만족도	5	탁월(5), 우수(4), 양호(3), 보통(2), 미흡(1)
합계		100	

* 평가대상은 동일 세부유형펀드로 하며, 대상기간은 최근 1년(전월말 기준)

2. 배분비율

점수차 구간	비율(%)		비고
	A주간운용사	B주간운용사	
A-B > 20	100	0	허용범위 ±15%
20 ≥ A-B > 10	75	25	허용범위 ±15%
10 ≥ A-B > -10	50	50	허용범위 ±15%
-10 ≥ A-B > -20	25	75	허용범위 ±15%
-20 ≥ A-B	0	100	허용범위 ±15%

* 기존자금 환매시에는 (100-비율)로 적용, 100억원 이하일 경우 배분비율 적용배제 가능

(별표 9)

금융상품 선택 기준(제3조의 제2항 관련)

기준	확정금리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수요를 우선 고려하여 확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유리한 기대수익률이 존재할 경우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 제4조 및 5조에서 정한 B등급 이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 수익성 : 높은 금리 순으로 예치 ○ 유동성 : 상품 환금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 제6조에서 정한 B등급 이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 수익성 : 위험 대비 기대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예치 ○ 유동성 : 상품 환금성 여부
금융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자금 : 수시입출금식 상품,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 중장기자금 :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자금 : 채권형 수익증권 등 ○ 중장기자금 : 주식·채권·혼합형 수익증권 등